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601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: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경훈,

김규남, 김영철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남창진, 문성호, 박영한, 송경택, 신복자, 유정인, 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 의원(21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건축계획, 굴토, 구조, 해체 등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의 안건은 증가하였으나, 현행 조례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규모를 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'150명 이하'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'60명 이내'로 제한하고 있음.
- 위와 같은 제한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안건 처리에 적합한 건축위원 선정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,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상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규모를 최대 100명 이내로 확대함(안 제5조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#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"60명"을 "100명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서	②
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	
원회(이하"구 위원회"라 한다)	
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	
1.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	1
포함하여 25명 이상 <u>60명</u> 이	<u>100명</u>
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	
여 구성한다. 다만, 영 제5조	
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	
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	
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	
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	
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	
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	,
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	
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	
할 수 있다.	·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